



증권·보험회사 파산처리 제도, 국제적 기준으로 논의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금융청은 증권·보험회사의 파산처리와 관련해 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빠르면 연내 논의를 정리,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.

- 현행 일본의 파산처리 제도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왔으나, 증권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자 함.¹⁾
- 따라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·보험회사 등에도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금융시스템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임.
 -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실효적인 파산처리 제도와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정비를 제언하고 8월부터 각국의 현황 조사를 시작하기로 함.
 - 한편, 국제통화기금(IMF)은 일본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파산과 회생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제언한 바 있음.

■ 이번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일본 금융청은 증권·보험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물론 국유화에 따른 경영진 해임과 파산 금융기관의 관리자 임명 등이 가능해짐.

- 이외에도 파산 금융기관의 계약 해제, 자산 매각 등과 같은 자산관리 처분 권한이 주어지며, 매각 및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제3의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도 있음.
- 한편, 일시 국유화를 거쳐 제3자에 매각된 사례는 일본장기신용은행(長銀)과 일본채권신용은행(日債銀) 등이 있으며, 리소나(りそな)은행과 아시카가(足利)은행이 파산처리 후 국유화가 결정된 바 있음.

(로이터 외, 8/28)

1) 은행, 증권, 보험회사의 이용자 보호제도는 있지만 금융기관 파산 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은 은행에만 존재해 증권,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 것임.